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2020.2.27.(목) 10:00, 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
※ 국가·지역별 가나다순

□ 입국금지 조치

※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

※ 영지적 입국 금지		조 치 사 항
	나우루	▶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 입국금지(2.24.)
	마이크로 네시아	▶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(2.24.)
	몽골	▶최근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 (2.26-3.11)
	베트남	▶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(대구·경북)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(2.26 21시 시행) / 한국에서 출발·경유 하여 입국하는 외국인(대구·경북 이외)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 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(2.25.) ※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(대구·경북)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 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와 협의 필요 ※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입국금지(2.2)
	사모아	▶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를 방문·경유한 외국 인의 경우 △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, △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, △14일 이내 입국시 추방(2.19.)
OLAIOL	솔로몬제도	▶최근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홍콩, 태국, 이란, 대만, 마카오 등 10개국·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(2.25.)
아시아· 태평양	싱가포르	▶ 최근 14일 이내 대구·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·경유 금지/ 싱가 포르 국민, 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 (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)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(2.26.(수) 23:59)(현지시간 기준)
	일본	▶최근 14일 이내 대구·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(2.27. 0시 시행) ※ 중국 후베이성,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(2.12.)
	키리바시	▶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△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△ 미 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, △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(2.11.)
		※ 15개국 :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호주, 태국, 미국, 독일, 프랑스, 영국, 스페인, UAE, 이집트
	투발루	▶ 한국,중국,홍콩,일본,싱가포르,태국,대만(이상 고위험국가)에서 입국하는 외국 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,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/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(2.24.)
	피지	▶최근 14일 이내 한국(청도, 대구), 이탈리아, 이란 방문 여행객 입국 금지 발 표(2.26) 2.28부터 시행
		※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(환승 포함) 금지(2.2)
	필리핀	▶ 한국(대구·경북)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금지(2.26)

	홍콩	▶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 거주자(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)는 입국불가/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· 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(2.25.) ※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 (1.27.) ※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(2.8.)
중동	바레인	▶ 최근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(2.21.) ※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(2.13.) ※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,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
	요르단	▶최근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(2.23.)
	이라크	▶ 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·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(2.25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
		▶ (쿠르드지방정부)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 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(2.26.)
	이스라엘	▶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(2.24.) ※ 중국(2.2.), 홍콩·마카오·태국·싱가포르(2.18.), 한국·일본(2.24.)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
	쿠웨이트	▶최근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(환승 포함) 금지(2.25.)
미주	사모아 (미국령)	▶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(미국령)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△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, △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(2.7.)
아프리카	모리셔스	▶ 한국, 이탈리아(북부 3개주)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(2.24.) ※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(2.2.)
	세이셸	▶최근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/ 최근 14일 이내 중국, 한국, 이탈리아, 이란에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의 하선 불허 / 상기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

□ 입국절차 강화 : 검역 강화, 격리 조치 등

가. 중국 지역

※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

구 분		조 치 사 항
중국 (지역별)	산둥성	▶ 칭다오 류팅공항,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있는
		경우) 또는 지정호텔 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)(2.24)
		▶산둥성 웨이하이공항,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
		격리관찰,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(2.25)
	랴오닝성	▶다롄공항,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
		건강상태 보고(2.25)
		▶ 랴오닝성 선양공항,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

		으로 목적지까지 이송(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, 사업장 격리, 또는 호텔 격
		리관찰)(2.26)
	지린성	▶지린성(옌지공항,장춘공항 등),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(고정
		거주지 있는 경우)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), 확진자
		탑승 확인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(2.26)
	헤이룽장성	▶ 하얼빈공항,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) 또는 지정호텔 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)(2.26)
	푸젠성	▶ 샤먼공항, 국제선 탑승객 지정호텔 이동하여 건강체크 후 무증상시 14일간
		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(2.26.)

나. 기타 지역

구 분		조 치 사 항
아시아 태평양	대만	▶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(한국인 포함)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(2.25.)
		※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(2.5.)
	마카오	▶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 에서 14일 격리조치(2.26.)
		*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,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/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
		※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(1.26.) /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 (중국본토)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,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(2.20.~)
	인도	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입국하거나, 2.10 이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, 14일간 격리될 수 있음(may be quarantined) ※ 인도 공항보건국(APHO)와 인도 보건복지부는 △ 기존보다 검역 강화, △ 신고서 작성시 국내 여행이력 세분화 요청, △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, 기존처럼 지정 병원으로 격리(해당 발열자 기준 앞뒤 3열 포함, 총 7열 좌석에 탑승한 승객도 격리될 수 있음), △ 증상이 없는 경우, 격리 조치 없이 입국 후 인도 정부에서 2-3일간 건강상태 확인 예정 ▶한국, 중국, 홍콩, 일본, 태국, 싱가포르, 베트남, 네팔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發 모든 항공기 승객에 체열검사 등 검역 실시중 ※ 최근 델리 공항에 입국하던 우리 국민 2명이 체온이 높아 병원에서 격리중 (1명은 음성 판정, 1명은 검사중 / 최소 14일 격리 예정) ※ 2.23. 베트남, 네팔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4개국 추가 지정
	태국	▶ 경북,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,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(2.23.) ※ 보건부는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 일간 자가 격리 권고
	프랑스령 폴리네시아	▶ 2020.1.1.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게 △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△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/의료소견서 제출(5일내)(2.27.)
유럽	벨라루스	▶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지역 보건 당국에 연락(2.25)
	영국	▶ 한국(대구·청도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 북부 지역,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 의료서비스(NHS)에 통보토록 요청(2.25.)
	<u> </u>	

	카자흐스탄	▶ 한국, 싱가포르, 일본, 태국, 홍콩, 마카오,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(△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,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 터링) 시행(2.20.)
	키르기스스탄	▶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탑승객(한국인 및 키르기즈인 등)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(2.24.)
	타지키스탄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(2.25.)
	투르크 메니스탄	▶확진자 발생국 국적자(외교관 포함)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-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(2.23.)
중동	오만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싱가포르,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(2.22.) △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"14일 자가 격리"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△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
	카타르	▶ 한국, 중국,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(2.25.)
아프리카	우간다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·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(2.18.)
	모잠비크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(발열,기침)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※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(2.23.)
	튀니지	▶ 보건부, 중국·한국·이탈리아·이란 관련 입국자의 경우 건강확인서 징구, 의심자는 추가확인후 필요시 21일 자가격리(2.25.)
		△유증상(발열, 콧물 등) 시 의무 샘플 검사 실시, △입국 후 보건당국(보건의료서비스등)에 통보/등록, △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△일정기간 동안 매일 의료진 문진, 전화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등
	모로코	▶보건부, 한국에 체류·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(별도창구 입국, 열 감지기 등) 실시(2.25.)
	콜롬비아	▶최근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말레이시아, 이탈리아, 태국, 아랍에미리트,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 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(2.24.)
중심미	파나마	▶최근 30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일부 지역)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△건강상태 문진, △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(2.27.)
	파라과이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홍콩, 태국, 이란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당국에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(2.27.)

/끝/